

시구정촌에서의 신고 절차



1

필요한 신고 수속

1-1

주소 (거주지) 의 신고 절차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구정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사람

- 체류카드 소지자 (중장기체류자)
- 특별영주자
- 일시적으로 신변보호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출생 또는 일본국적상실에 따른 경과체재중인 사람

(1) 신규 상륙허가를 받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 거주지가 정해진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할 때는 체류카드 (후일에 발급받는 사람은 여권) 를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에는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도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입신고를 하면 체류카드에 등록하는 주소도 동시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②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 거주상황 등을 증명할 때 필요로 하는 주민표 사본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유료)

③ 시구정촌에서 마이넘버를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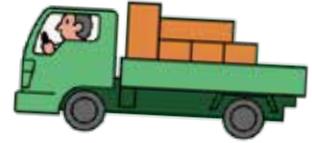
※마이넘버: 일본에서의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수속을 할 때 본인의 신분확인을 곧바로 할 수 있는 12 자리 번호

자세한 사항은 2 마이넘버 제도를 참조하십시오.

④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마이넘버 안내와 함께 송부되는 발급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를 할 경우

- ①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경우
 - 이사 전
→ 살고 있던 시구정촌에 전출신고서를 제출
 - 이사 후
→ 이사 후 14 일 이내에 새 주거지 관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
- ② 동일한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후 14 일 이내에 관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
- ③ 해외로 이주할 경우
이사하기 전에 현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전출신고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english/move-in_move-out.html



1-2

혼인신고



일본에서 결혼을 할 경우

- 시구정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결혼하려는 당사자들에게 혼인의 요건이 갖추졌다고 인정되면 혼인신고서가 받아들여져 혼인이 성립됩니다.

(1)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일본인	호적등본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 본국 주일대사관·(총)영사관에서 절차를 밟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1). ·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건 제출시 전부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주2).

(주 1) 국가에 따라서는 이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2)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번역자는 본인이어도 됩니다.

(2) 본국에서의 유효성

일본에서 성립된 혼인은 일본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혼인이 본국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성립된 혼인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1-3 이혼신고

일본에서 이혼할 경우

- 이혼하고자 하는 양자가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거주지나 국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구정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합니다.

(1) 본국에서의 유효성

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은 일본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이혼이 본국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성립된 이혼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주일대사관·(총)영사관으로 문의하십시오.

(2) 마음대로 이혼신고서가 제출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상대방(일본인)이 마음대로 이혼신고서를 시구정촌에 제출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일본인)의 본적지 또는 당신의 주소지 시구정촌에 가서 이혼신고서 불수리 신청서를 제출해 두면 이혼 성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4 사망신고

일본에서 사망했을 경우

- 친족이나 동거인 등이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 신고는 사망한 곳 또는 신고하는 사람의 거주지가 있는 시구정촌에 제출하십시오.

(1)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이 외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체류카드의 반납

사망한 외국인의 체류카드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14일 이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지고 간다.
-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한다.

보내는 곳: 〒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 2-7-11
 東京港湾合同庁舎 9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おだいば分室
 (봉투 겉면에 ‘在留カード返納(체류카드 반납)’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1-5

인감등록

인감등록이란

- 시구정촌에 인감(도장)을 등록(신고)하는 수속을 인감등록이라고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중요한 절차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인감등록의 절차

등록신고에 필요한 것

- 인감등록신청서
 - 인감(도장)
 - 본인확인서류(마이넘버, 체류카드, 운전면허증 중에서 한 가지)
- ※ 등록이 끝난 후 인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 인감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정촌에 문의하십시오.



(2) 인감등록증명서

- 인감등록된 인감(도장)임을 증명하는 것
- 인감등록증 등을 관할 시구정촌에 제시하고 신청하십시오.
-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이넘버 제도

2-1 마이넘버 제도란

마이넘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① 연금육아수당,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 ② 해외에 송금할 때 또는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
- ③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마이넘버를 사용할 때에는

- ① 그 번호가 명백히 당사자 본인의 마이넘버인지
- ② 당사자 본인이 여권 등과 같이 얼굴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마이넘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2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IC칩이 내장된 카드입니다.

(1) 기재 사항

앞면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얼굴사진

뒷면 : 마이넘버



앞면



뒷면

(2) 언제 사용하는가

- 공적인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
- 소득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사용
- 자녀에 대한 수당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입소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용
-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시 사용 (휴일에도 가능.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취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으로 사용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index_16743.html



(3) 신청 방법

일본에서의 거주지가 정해지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할 때 마이넘버 카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외).

처음 신청할 때에는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얼마 후에 마이넘버 카드 발급신청서가 자택으로 송부됩니다. 발급신청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스마트폰으로 신청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고 발급신청서의 QR 코드로 신청용 WEB 사이트에 접속한다

② PC로 신청

디지털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고 신청용 WEB 사이트에 접속한다

③ 우편으로 신청

발급신청서에 얼굴 사진을 붙이고 송부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는다

④ 증명사진용 촬영기로 신청 (대응 기종만)

터치 패널을 조작하여 요금을 넣고 발급신청서 QR 코드를 바코드 판독기에 대고 읽힌다.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사진을 찍어 송신한다.

⑤ 거주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신청 (일부 제외)

발급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거주지 관할 시구정촌에 제출한다.

※ 시구정촌 창구에서 발급에 필요한 본인 확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면 마이넘버 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jinbango-card.go.jp/ko-kofushinse/>



(4) 수령 방법

신청 1 개월 후에 시구정촌에서 엽서가 배달됩니다.

이 엽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마이넘버 카드를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jinbango-card.go.jp/ko-uketori/>



2-3

마이넘버 카드 사용상의 주의점

- 성명이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 체류기간을 연장(갱신)한 후에는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거주지의 시구정촌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십시오.
- ※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 체류 신청 시 발생하는 특례기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체류기간 갱신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월간(특례기간)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로운 체류카드를 수령한 후 다시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을 새로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english/basic_resident_registration_card.html



2-4

기타

이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넘버 제도

<https://www.digital.go.jp/policies/mynumber/>

마이넘버 카드

<https://www.kojinbango-card.go.jp/ko/>



전화문의도 받습니다.

콜센터

(월~금 9:30-20:00, 토·일·경축일 9:30-17:30)

◎일본어

전화 0120-95-0178

◎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전화 0120-0178-27

